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29 선고 2023가합10200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의 소]

전 문

원고A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완수

피고B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주 담당변호사 방승만

변론 종결2024. 10. 8.

판결 선고2024.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683,9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70335호로 마친 2011. 9. 3.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D의 5대손인 E, F 두 명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역사적 배경

이 사건 토지에는 D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해당 토지에 채권자를 G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매각될 가능성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졌고, 2만 여 명의 모금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G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13대 종손인 H 등 17명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932. 10. 26. 접수 제48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을15).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내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1. 11. 13. 접수 제10112호로 'B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78. 4. 28.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1994. 5. 3. 등기명의자의 명칭을 'B문중'에서 'A종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11. 4. 신청착오를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다시 'B문중'으로 변경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8. 8. 27. 등기명의인의 주소지를 기존의 아산군 I에서 아산시 J건물 4층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10. 2.에는 2008. 8. 27. 등기명의인 표시에 대표자 기재를 추가하여 대표자를 K으로 기재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2011. 10. 17.에는 2011. 9. 3.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를 L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 원고는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물인 종중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인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정관으로 총회 이외의 특별수권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관(갑17) 제18조 제2항은 "종재 보존 및 관리의 건"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문언상 총유물인 원고 재산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이

비교적 명백하다. 같은 조 제1항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및 부의'를 이사회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굳이 위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예시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제3항은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처리'를 역시 이사회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무관하므로,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만을 제1항의 예시로서 원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면 원래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에

관한 규정에 명문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정관 제21조도 "단 종토매매등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관으로 총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3. 소의 이익 존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변경등기 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B문중'이 원고를 표상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등기의 내용은 대표자를 변경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등기명의인 기재가 원고를 표상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변경등기는 원고의 대표자 아닌 자를 대표자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대표자 표시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1994. 5. 3. 'B문중'에서 'A종회'로 변경되었다가 1997. 11. 4. 'A종회'에서 다시 'B문중'으로 경정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기재 추가 내지 변경을 제외하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을5)에는 그 소유자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일관하여 'M'로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상태에서 법인명칭이 달라진다고 종전과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동일한 이상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표상하는 단체가 실제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어도 이 사건 변경등기를 통해 그와 같이 표상되는 단체의 동일성이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한 이 사건 변경등기의 경정등기신청이 '등기명의인이 원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갑5),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청구는 분쟁해결을 위한 적법한 방법이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아람

판사이영곤

판사이두현